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(하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17.

발 의 자 : 하태경 · 박준영 · 서형수
송옥주 · 위성곤 · 이연주
이용득 · 이원욱 · 이정미
최도자 · 최인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 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과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방지시설 노후화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6조제1항 단서 등).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9조제2호 중 “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”를 “제26조제1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·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신고·변경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
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
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
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(생략)

제8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
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
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2.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
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
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
치·운영한 자

3. ~ 13.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9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26조제1항에-----

3. ~ 13. (현행과 같음)